## 2019 KBO 규약(86p~93p)

## 제14장 유해행위

제148조 [부정행위] 선수, 감독, 코치,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 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15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- 1. 경기(제13장 소정의 경기를 말하며, 이하 같다)에 있어 고의적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행위
- 2.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 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
- 3.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 도박을 하는 행위
- 4.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하는 행위
- 5.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- 6.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 - 가.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
  - 나.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ㆍ제작ㆍ유통행위
  - 다. 불법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중개 알선행위
  - 라.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위하여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마. 스포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
- 바. 마목과 관련하여 승부조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  - 사.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- 7. 제48조에 따른 사해행위
- 8. 기타 위 각 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시키는 행위

제149조 [보고의무] ① 선수, 감독,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구단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- ④ 총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구단 및 보고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**제150조 [부정행위에 대한 제재]** ① 총재는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,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- 1. 경고
- 2.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
- 3. 제명. 다만,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한다.
- ② 선수, 감독,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실격 처분의 제재를 가한다.
- ③ 구단 임직원이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다 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1. 직무정지
- 2. 금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
-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한 제재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- 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,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 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.
- ⑥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 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,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- ⑦ 선수와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가 있는 등으로 이적료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선수 연봉의 300퍼센트를 제6항 소정의 이적료로 본다.

제151조 [품위손상행위] 선수, 감독, 코치,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이 마약범죄, 병역비리, 인종차별, 폭력, 성범죄, 음주운전, 도 박, 도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

행위를 하여 사회적으 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, 직무정지, 참가활동정지, 출장정지,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있다.

## <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>

\* 각 제재 내용은 병과할 수 있음

구분	내용	
	1취 이바시	정규시즌 50경기 이상 출장정지, 제재금 500만원,
	1회 위반시	봉사활동 120시간
도박		정규시즌 70경기 이상 출장정지, 제재금 1,000만
(불법인터넷 도박	2회 위반시	원,
및 일반 도박 등)		봉사활동 180시간
	3회 이상 위반시	실격처분
	기타	직무정지
	① 가정폭력, 경기	외적 폭력
	● 출장정지 30경	경기 이상, 제재금 500만원
폭력행위	② 성범죄	
(가정폭력,	● 감독, 코칭스태프: 영구제명, 1년 이상 실격처분,	
경기 외적 폭력 등)	출장정지 100경기	기 이상, 1,000만원 이상 제재금
및 성범죄	● 선수: 영구제!	명, 1년 이상 실격처분,
	출장정지 72경기	이상, 1,000만원 이상 제재금
	③ 재발생시 위 ③	D, ②의 제재수준보다 가중처벌
마약류		
(향정신성 의약품,	실격처분, 직무정기	۲
대마 등)		
	영구실격, 직무정지	
병역 비리	(단, 구단 직원이	연루되었을 경우: 직무정지 1년 이상,
	구단이 연루되었을	을 경우: 제재금 1억 이상)
음주운전	① 단순 적발: 50	경기 출장정지, 제재금 300만원, 봉사활동 80시간

	② 음주 측정 거부(음주운전 확정 시): 70경기 출장정지,		
	제재금 500만원, 봉사활동 120시간		
	③ 음주 접촉 사고: 90경기 출장정지, 제재금 500만원,		
	봉사활동 180시간		
	④ 음주 인사 사고: 120경기 출장정지, 제재금 1,000만원,		
	봉사활동 240 시간		
	⑤ ① ~ ④항 중복 시 병과		
	⑥ 2회 발생시: ① ~ ④ 적용 항의 제재수준보다 가중처벌		
	⑦ 3회 이상 발생시: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		
	⑧ 기타: 직무정지		
사기, 배임 등	실격처분, 직무정지, 참가활동 정지, 출장정지, 제재금 부과, 경고처		
경제범죄	분		
도핑	한국도핑방지위원회(KADA)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제재		
	① 부정행위 방지, 스포츠윤리교육, 도핑 등 KBO가 주관하는 교육		
교육 및 행사	및		
불참 시	행사 불참 시 제재금 10만원 부과		
	② 단, 총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		
	① 1회 발생시: 출장정지 10경기 이상		
고조에 대취	② 2회 발생시: 출장정지 20경기 이상, 제재금 500만원,		
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	유소년봉사활동 40시간		
	③ 3회 이상 발생시: 출장정지 50경기 이상, 제재금 1,000만원,		
	봉사활동 80시간		
종교적 차별행위,	① 1회 발생시: 엄중경고 및 제재금 200만원		
인종 차별적	② 2회 발생시: 출장정지 5경기 이상, 제재금 300만원		
언행 등	③ 3회 이상 발생시: 출장정지 10경기 이상, 제재금 500만원 이상		
	① 1회 발생시: 출장정지 10경기 이상		
	② 2회 발생시: 출장정지 20경기 이상,		
심판 또는 리그 비방	제재금 500만원,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		
	③ 3회 이상 발생시: 출장정지 50경기 이상,		
	제재금 1,000만원, 봉사활동 80시간		
	1		

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 우	① 1회 발생시: 엄중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 ② 2회 발생시: 제재금 500만원 이상
기타	① 음주운전, 마약, 도박, 성범죄 등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해당 위반행위에 필요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KBO가 지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② 참가활동정지시 보수 지급도 정지되며, 이후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 ③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총재는 경중과 심각성에 따라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. 특히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총재의 제재가 있은 후에 그 행위를 이유로 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유죄판결이선고 또는 확정되는 경우 총재는 그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. ④ 음주운전, 마약, 도박, 성범죄 등의 위법행위(품위손상행위)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하여 제재한다.
	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[2015.1.13 → 2017.1.17 → **2018.9.11** 개정]

제152조 [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] ①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한 경우 총재는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- ②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15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③ 총재는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소속구단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④ 제3항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상벌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.
- ⑤ 총재는 제148조 [부정행위] 각 호 또는 제151조 [품위손상행위]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·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(직무)을 정지할 수 있다.

[1992.2.27 → 2003.6.5 → 2004.9.21 → 2009.3.4 → 2012.3.13 → 2014.4.10 → 2017.1.17 개정]

##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

제153조 [겸직금지] KBO의 정관 또는 KBO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어느 구단에 소속된 임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는 누구든지 다른 구단의 임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154조 [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] ① 구단 및 당해 구단 임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는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속 구단 외 다른 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.

② KBO 사무처 임직원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어떠 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.

제155조 [금전거래 등 금지] ①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소속 임직원, 감독, 코치, 선수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허용된다.

제156조 [전직제한] ① 소속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속구단과 사이에 제155조 소정의 금전거래 등을 한 구단 임직원, 감독, 코치 또는 선수는 선수계약의 양도 등의 사유로소속구단이 변경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관계 등을 청산하여야 한다.

② 감독, 코치 및 선수는 제1항에 따라 소유하던 전 소속구단의 주식을 처분하고 금전거 래를 청산할 때까지 KBO 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.

**제157조 [위반에 따른 제재]** ① 총재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리그 관계자에게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리그 관계자 중 감독, 코치 및 선수 는 총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리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참가활동도 할 수 없다.